

업데이트 : 농장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



Department
of Labor

위치

2026/1/1

뉴욕시

\$17.00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17.00

뉴욕주의 나머지 지역

\$16.00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임금 및 초과 근무

이제 외국인 비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노동자는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일반 임금의 1.5 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뉴욕주 노동부(877-466-9757)로 문의하거나 dol.ny.gov/ 에 방문하십시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휴일

고용주는 매주 1일(연속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휴일을 지정하여 미리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휴일을 노동자가 종교적 예배를 하는 전통이 있는 요일에 맞춰야 합니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농장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주 근무 시간과 일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노동부(877-466-9757 또는 www.labor.ny.gov/FarmLabo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보험

농장 고용주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장 근무조 조장은 직원에게 실업 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H-2A 외국인 게스트 노동자는 실업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노동부 실업보험 고용주 핫라인인 888-899-8810 번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보상

농장 고용주, 소유주 및 운영자는 연간 급여에 관계없이 직원에게 산재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산재 보상 준수 고지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을 통지받은 농장 노동 계약자, 감독, 관리자는 부상이 발생한 농장의 고용주,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가 산재 보상 청구서를 요청하는 농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 보상 위원회(877-632-4996 또는 wcb.ny.gov*)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 보험 및 유급 가족 휴가

농장 고용주, 소유주 및 운영자는 자격을 갖춘 농장 노동자에게 뉴욕 장애 수당(Disability Benefits, DB) 및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PFL 직원 자격 및 고용주가 자격 대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옵트아웃 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aidFamilyLeave.ny.gov](https://www.paidfamilyleave.ny.gov)를 참조하세요. 모든 고용주가 DB 또는 PFL 청구서를 요청하는 직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844-337-6303**번으로 전화하세요.*

*산재 보상, 장애 수당 및 유급 가족 휴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고용주 자료는 산재 보상 위원회의 농장 고용주를 위한 툴킷(www.wcb.ny.gov/content/main/coverage-requirements-wc/farms.js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결권

농장 노동자는 노동 조직을 결성, 가입 또는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단결권과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고용주의 간섭, 구속 또는 강요 없이 단체 교섭, 기타 상호 원조 또는 보호 목적으로 단체 활동(고용 조건 또는 직원들의 집단 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토론 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농장 노동자에게는 파업할 권리가 없습니다. 농장 노동자가 노동 조건과 조직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도 해고를 포함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고용 관계위원회(518-457-6410)에 문의하거나 perb.ny.gov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주 농장 노동자 주택 허가

고용주는 뉴욕주 보건부(또는 지역 카운티 보건부)에 연락하여 한 명 이상의 이주 근로자가 근무할 농장 또는 위탁 노동자 합숙소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보건부(**518-402-7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카운티 보건부 찾기: www.health.ny.gov/contact/contact_information/